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60
----------	-----

2023년 6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이영실 의원의 39명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3.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6월 21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영실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공공기관 및 시설 내 아이들의 안전한 체험과 성장을 위한 공공키즈카페나 돌봄 공간이 확대 설치되고 있는 바,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를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5조 제4호에 돌봄공간의 확충 규정을 신설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2023.6.8.~6.12.) 결과 : 의견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조례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아동을 고려한 돌봄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본 개정안은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함에 있어 아동의 돌봄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현행	개정안
<p>제15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제15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돌봄공간의 확충</u></p>

-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관한 기본 권리(4대 권리)를 실현함으로써 아동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뜻함.

UN아동권리협약 4가지 기본권 ¹⁾	
·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²⁾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아동결핍 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취미, 여가활동 등 성장과정에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하겠음.

1) 아동권리보장원, UN아동권리협약

2) 보건복지부(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 본 개정안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여 정서적·인지적 발달을 도모하고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시설 조성 시 돌봄공간 확충 노력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와 협력하여 아동의 돌봄 지원을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및 운영, 지원하고 있음.
 - ‘23.5월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내 260개소의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설치 또는 운영 중이며 76개소의 서울형 키즈카페가 설치 또는 운영 중임.
 -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는 각각 400개소 설치·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인구밀집도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의 특성 상 적합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으로 하여금 공공시설 조성 시 아동 돌봄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 수가 2000년 12,077천명에서 2022년 7,256천명³⁾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돌봄공간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하겠음.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여 아동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 조성 시 돌봄공간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아동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아동의 권리보장 및아동발달에 따른 생애주기별 욕구 다양성을 고려하여 “돌봄공간 확충”을 “아동이용공간 조성”으로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시장이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으로 “아동이용공간 조성”을 규정함(안 제 15조제4호).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60
----------	-----------

제안년월일 : 2023년 6월 28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아동의 권리보장 및 아동발달에 따른 생애주기별 욕구 다양성을 고려하여 “돌봄공간 확충”을 “아동이용공간 조성”으로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시장이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으로 “아동이용공간 조성”을 규정함(안 제15조제4호 신설).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이용공간 조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돌봄공간의 확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15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아동이용공간 조성</u></p>